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-7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4. 5. 3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현대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9-7번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96㎡	건폐율	층수 지상: 2층	
	주 용 도	가설건축물	구조 조립식판넬	건축물 동수 주 1동, 부 동	
	최고높이	7.3m	용적률	연면적 합계 792㎡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체)분야	○ 안전요원을 포함한 인원계획을 수립하고, 인원 및 장비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수행바람. ○ 해체계획서 내 가설비계, 가설울타리, 가설방음벽 등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, 해체대상건축물과 별도의 가설울타리 설치로 보여지므로 명칭 및 상세 구분하여 계획 수립바람. ○ 해체계획서 p.39 내 크레인구조기술사가 날인한 크레인 구조검토서를 제출하고, 25톤 크레인의 인양가능중량 1ton에 대한 근거자료 추가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